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11. 2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11 . 3 .

다. 상 정 일 자 : 1998. 11 . 3 제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

4. 검 토 내 용

가.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2의 건국」과 관련,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98. 10.1제정 대통령령제15903호)의 규정에 따라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임.

나. 타관련법 위배됨이 없으며, 자구,내용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